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54838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가소34809 판결
변 론 종 결 2022. 4. 14.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5. 7.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상환을 해야 하고, 신용대출 기록이 있으면 더 많은 금액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20. 5. 15. 18:00경 피고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송금하여 위 돈을 편취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나. 피고는 D은행으로부터 4건의 대출을 받았는데, 2020. 5. 14.경 C은행 E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점수를 높인 후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쿼서비스 기사를 통해 F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다. 피고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에 2020. 5. 15. 원고가 12,000,000원을 송금하자 성명불상자는 2020. 5. 15.부터 2020. 5. 16.경까지 위 C은행 계좌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900,000원을 인출하였다.

라. 피고는 위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약7711호로 2020. 7. 24.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양도·양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신원이 불분명한 성명불상자의 요구를 받고 별다른 확인도 없이 피고 명의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F에게 양도하였고, ② 성명불상자가 피고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신원을 숨긴 채 불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며, ③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성명불상자가 이틀 간 12차례에 걸쳐 11,900,000원을 인출할 때까지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④ 보이스피싱 범죄가 수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체크카드 등을 교부할 경우 위와 같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거나 적어도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에 해당되므로, 피고는 민법 제76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대여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대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대여 목적의 실현가능성, 대여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대여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84707 판결 참조).

2) 살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늘리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던 점, ② 피고는 접근매체 대여 및 원고가 송금한 돈의 입·출금 과정에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③ 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사기방조죄로 기소되지는 않았던 점, ④ 피고는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두절되자 카드분실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체크카드를 F에게 보내줄 당시 체크카드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권성우

판사 원용일

판사 박정운